

프랑스의 전문직 인력 도입 : 느슨한 통합주의

양승엽 (프랑스 낭트대학교 법·사회변화연구소 부연구원)

■ 머리말

프랑스에 외국인력이 대거 유입된 계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피해복구를 위해 튀니지, 모로코, 알제리 등 아프리카의 구(舊)식민지 국민들을 대거 받아들인 데서부터 시작한다. 현재 프랑스의 인구 6,000만 명 가운데 구식민지 출신만 해도 600만 명으로 이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외국인 비율이라고 볼 수 있다¹⁾. 박애정신에 따라 프랑스는 인종차별이 금기시되어 있지만 이들을 차별하지 않는 대신 적극적인 지원정책도 없는 일종의 방관 정책을 표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성장한 이민 2세대들이 높은 실업률을 보이며 프랑스의 불안요소로 꼽히고 있는데 이들의 소요²⁾로 인해 프랑스는 이민 및 외국인들에게 점차 적대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2006년과 2010년에 이루어진 이민법 개정도 불법체류자 추방 및 체류증 및 국적 취득의 허가 등을 까다롭게 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인력이동의 자유로움에서 선별로 정책이 바뀌었

1) 김정순 (2010), 『외국인의 국적 취득 및 체류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p.83 참조.

2) 가령 2010년 7월 17일 발생한 그르노블의 소요사태를 들 수 있다. 한 아랍 청년의 죽음으로 촉발된 이 폭동은 그 배경에 아랍 청년들의 높은 실업률이 자리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르몽드지 2010년 7월 19일자 기사 참조. (http://www.lemonde.fr/societe/article/2010/07/19/violences-a-la-villeneuve-il-n-existe-pas-de-specificite-grenobloise_1389609_3224.html)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의 국내의 프랑스의 외국인 인력정책에 대한 연구도 억제와 제재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프랑스 역시 자본과 기술의 흐름이 국경을 넘어서고 있는 지금 국익을 위해서는 외국 전문인력 유치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프랑스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력은 받아들이겠다는 정책으로 돌아서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혜택을 제시하는 적극적 (positive) 유인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프랑스의 외국 전문인력에 대한 기초는 2006년 입법(2006년 7월 24일)에 잘 드러나 있는데 2006년 입법은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하나는 기존의 단기 체류만을 허용하던 정책에서 전문기술을 가진 외국인에게는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입국 절차를 단순화하며, 마지막으로 세계 각국과 기술인력을 수입하는 협정을 맺어 전문직을 유인하는 것이다³⁾. 이하에서는 2006년 입법을 중심으로 프랑스가 외국 전문인력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정책을 알아본다.

■ 2006년 입법의 목표

먼저 2006년 입법의 목표는 바로 프랑스의 경제적 요구에 부응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프랑스의 국익뿐만 아니라 인력 수출국의 이익과 경제발전까지도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둔다. 자국뿐만 아니라 관계된 타국의 발전까지도 고려한다는 목표는 특히 타국과의 인력 교류에 대한 협정의 성격에서 잘 드러난다.

3) 프랑스는 아메리카 대륙이나 오세아니아 대륙과 같이 이주해 온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하는 이민국가가 아니다. 프랑스에서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다. 따라서 여기서의 외국인력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오는 외국인이 아닌 외국 국적을 가지고 프랑스에서 일을 하는 이들로 국한한다.

■ 전문인력에 대한 체류 기간의 연장

체류증의 분류

앞서 언급하였듯이 프랑스는 외국인의 차별이 타국에 비해 없는 편이나 그렇다고 외국인이 정착하기 용이한 나라도 아니다. 그 외관 중의 하나가 바로 체류증 제도이다. 프랑스에 거주하는 외국인인은 일정 기간을 주기로 프랑스에서 체류가 합법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체류증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프랑스로의 외국인 거주에 걸림돌이 되었다.

먼저 기존의 체류증에 대해 알아보면 근로의 종류와 무관하며, 그 기간이 단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한에 따라 분류하여 보면⁴⁾ 1년 단기 체류증으로는 여행, 학생, 연수, 학술, 예술·문화, 단기 근로, 상업, 무급여(Non salariés), 파견근로⁵⁾, 가족(Vie privée et familiale) 체류증이 있는데 그 기간 내에 한정된 조건 내에서 근로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10년 장기 체류증으로 은퇴(retraité) 체류증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단기 체류증으로는 외국 전문인력이 프랑스 내에서 근무할 동기를 유인할 수 없으므로 2006년 입법은 새로운 체류증을 신설하였다⁶⁾.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러한 체류증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은 비EU국가 등이라는 점이다. EU국가 및 일부 국가는 EU 국가 간의 이동이 자유로워 체류증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⁷⁾.

4) 프랑스의 '외국인의 입국과 거주 및 망명법(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roit d'asile, CESEDA) 제 311-1조 이하 참조.

5) 여기서의 파견근무는 후설할 동일 기업 근로자 체류증의 파견근무와 달리 파견기업 간에 동일 계열이 아니어야 한다.

6) 이하 새롭게 신설된 체류증의 내용에 대해서는 프랑스 정부 '전문직 이민' 사이트, <http://www.immigration-professionnelle.gouv.fr> 및 이민청 사이트, <http://www.immigration.gouv.fr> 참조.

7) 여기 EU 국가 중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2014년까지 제외되는데 단, 국가계획에 따른 고등기관의 교육자와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인력은 가능하다. 그리고 EU 가입국은 아니지만 같은 유럽 생활권이라 할 수 있는 스위스와 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는 포함한다. 또 알제리는 별도의 협정에 따라 포함된다. 이하에서 EU국가 등이라 함은 이런 전제를 뜻한다. 즉 EU 국가 등 = EU 국가 -

거주증

가장 장기간의 거주를 보장하는 것으로 그 기한이 10년이다. 이는 투자자들이 프랑스에 장기간 머무르면서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역시 그 조건이 까다로와 외국인은 적어도 1,000만 유로 이상을 투자하거나, 회사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적어도 50인 이상을 고용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동일 기업 근로자 체류증

이 정책의 목표는 같은 그룹 계열의 회사이지만 국외에 있는 근로자가 프랑스에서 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데 있다. 근로의 목적은 외국 지점에서 프랑스로의 파견근무뿐만 아니라 프랑스 현지 기업과의 직접 근로계약을 맺는 것까지 포함한다.

그 조건을 보면 먼저 파견근무 근로자의 경우 프랑스에서 최소한 3개월 이상을 근무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임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최저임금(SMIC)의 1.5배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 취업계약을 맺는 근로자의 경우는 프랑스 기업에 의해 근로가 알선되어야 하고, 역시 최저임금의 1.5배 이상을 받아야 한다. 체류 기한은 3년이며 갱신할 수 있다.

능력과 재능 체류증

이 체류증의 목표는 능력과 재능을 가진 외국인들이 프랑스에 입국해 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프랑스와 자국의 경제적인 발전을 꾀하며 뛰어난 지적 능력에 과학, 문화, 인문, 스포츠에 재능이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 체류증을 받으면 원하는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고, 가족들은 가족 체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우선지원국가(Zone de solidarité

불가리아 - 루마니아 + 스위스 + 아일랜드 + 리히텐슈타인 + 노르웨이 + 알제리를 말한다. 후술한 외국 전문인력의 출신국은 모두 비 EU 국가 등을 의미한다.

prioritaire : ZSP)⁸⁾ 출신의 인력들은 그 국가와 연계된 별도의 원조를 받을 수 있다. 단, 6년 후 ZSP 국가로 돌아가야 한다. 또 다른 체류증과 달리 그의 작업 목표와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 내무부(ministère de l' intérieur)에서 이를 심사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⁹⁾. 체류 기한은 3년이며 갱신할 수 있다.

계절근로자 체류증

이 체류증의 목표는 농업 분야이든 비농업 분야이든 계절근로자들을 일시적으로 프랑스에 체류하게 하는 것이다. 1년 중 6개월 이상을 프랑스 외 지역에 거주하여야 한다. 즉 1년을 지속하여 프랑스에서 취업을 할 수가 없다. 체류 조건은 먼저 구인을 하는 기업은 인력을 구할 수 없었다는 증명을 하여야 하고 3개월 이상 근로를 하여야 한다. 체류 기한은 3년이다.

유럽 블루카드의 도입

한시적인 체류증만으로 전문직 인력을 유인하기란 그리 쉽지 않는 방법이다. 그래서 미국의 그린카드(Green Card, 영주권)를 본딴 유럽 블루카드(Carte Bleue Européenne)라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였고 2010년 10월 하원을 통과하여 2011년 2월에 상원에서 토의되고 있다¹⁰⁾. EU 의회의 지침(directive, 2009/50/CE)을 프랑스 국내이민법(외국인의 입국과 거주 및 망명법 제313-10조)에 신조항을 첨부하여 소화한 것으로 비EU국가 등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유럽 국가 내에서 자유롭게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다. 기한은 5년이며, 원하는 곳에서 자유로이 취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을 엄격하게 고급인력(hautement qualifié)에 한정한다.^{11) 12)}

8) 프랑스의 경제 및 문화 원조를 받는 국가들로서 주로 아프리카와 아랍 국가들이다.

9) 프랑스 행정사이트, <http://www.service-public.fr/actualites/00516.html> 참조.

10) 르몽드지 2011년 2월 3일 기사, <http://www.lemonde.fr/cgi-bin/ACHATS/ARCHIVES/archives.cgi?ID=3ad2d4bd4ed23c94ef8a6e3d9a1a1cf57affc5c4f7d97cf3> 참조.

11) EU 입법사이트, http://europa.eu/legislation_summaries/justice_freedom_security/free_movement_

블루카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보면 매우 까다로운데 ① 1년 이상의 전문기술을 요구하는 분야에 취업계약을 하였으며, ② 대학입시 이후 3년이 지나고(Bac +3)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거나 전문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험을 쌓은 자이며, ③ 월 3,991유로(年 47,898유로) 이상을 버는 사람이어야 한다¹³⁾.

■ 전문인력에 대한 절차 간소화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체류 기간의 연장뿐만 아니라 입국과 체류의 절차까지도 간소화하여 준다¹⁴⁾.

장기비자의 경우 1년 기한의 단기 체류증을 면제하여 준다. 그리고 입국자의 종류를 나누어 편의를 제공하는데, 먼저 높은 지위의 경영자나 고용주에게는 별도의 전용 창구가 제공되는데 이는 젊은 전문직 종사자나 고액 연봉자, 기업 그룹 간의 인사이동, 그리고 특정 기술직에게 해당한다. 그리고 외국 학생에게는 취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를 위해 방문을 한 경우 그 기간은 최고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장기비자의 체류증 면제

장기비자는 보통 1년 이상의 비자를 말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단기(1년) 체류증을 면제하여 준다¹⁵⁾.

of_persons_asylum_immigration/l14573_fr.htm 참조.

12) 참고로 프랑스 통계청의 추산에 의하면 최근 4년간 프랑스 전체 외국인력 유입 중 오직 14.6%만이 기술을 가진 전문인력이었다. 프랑스 인력도입 중 가장 흔한 것은 가족 초청에 의한 이민이다. 위 르몽드지 2월 3일 기사 참조.

13) 프랑스 정부 '전문직 이민' 사이트, <http://www.immigration-professionnelle.gouv.fr> 참조.

14) 위 사이트 참조.

15) 과거 프랑스는 비자를 받고 입국하여도 체류증을 받아야 하는 이중구조였다.

역시 비EU국가 등의 외국인 출신이어야 하고, 첫째, 3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있거나, 둘째, 12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어도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3년 기한의 체류증 자격자인 동일 기업 근로자, 능력과 재능, 계절근로자 체류증의 영역과는 겹쳐서 안 되고, 1년 기한의 체류증인 수습, 학술, 예술·문화 체류증 및 10년 기한의 거주증의 자격과도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고위층 및 경영진의 체류

여기서의 고위층 및 경영진이란 조직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진 자를 말한다. 이들은 국제적인 그룹의 인사로 프랑스 내 기업에서 월 5,000유로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자를 대상으로 입국 절차를 간소하게 해주는 것이다. 혜택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OFFI¹⁶⁾로 입국 창구를 단일화하고 수속 기간을 줄여준다. 앞서 말한 동일 기업 근로자 체류증의 해당자가 대표적이다. 역시 1년간 체류증을 면제하여 준다.

청년 전문직의 체류

여기서의 청년 전문직은 프랑스와 협정을 맺은 국가 출신의 젊은이를 말한다. 이들은 프랑스에서의 직업, 어학, 문화적 소양을 심화하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로서 프랑스 기업 내에서 전문직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프랑스가 앞서 밝힌 대로 프랑스로의 전문직 유입이 프랑스 뿐만 아니라 본국의 발전에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들기 위한 조건으로는 먼저 18~35세(베냉은 40세까지) 사이여야 하며, 양국 간¹⁷⁾ 협정

16) Office Français de l'Immigration et de l'Intégration : 프랑스에서 외국인의 이주와 프랑스로의 통합을 추진하는 부서이다.

17) 이들 국가는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캐나다, 미국, 가봉, 마로코, 뉴질랜드, 루마니아, 세네갈, 튀니지 등이 있다.

(accord bilatéral)이 있거나 양국 간¹⁸⁾의 위탁 합의서(accord de gestion)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프랑스어를 원활히 구사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였다는 학위가 있어야 하고, 3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그 근로계약은 18개월을 넘을 수가 없는데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외국 학생의 취업권

이는 프랑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요건은 비EU국가 등에서 학생 자격으로 입국한 장기비자 소지자나 단기체류 소지자이면 된다. 그러나 근로시간에 제한을 받는데 법정 근로시간의 60%인 964시간 이내에서만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학생은 근로를 위해 갱신할 수 없는 6개월의 연장 체류증을 받을 수 있다. 만일 964시간 이상을 근무하거나 최저임금의 1.5배 이상을 급여로 받을 경우 경시청에 가 체류증의 종류를 바꾸어야 한다. 학생은 1년간의 체류증을 면제받음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연수생의 체류

이 제도는 연수를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을 위한 제도로서 여기서 연수생이란 자국의 기업 및 학교의 연수프로그램이나 EU의 프로그램에 의해 입국한 외국인이다. 이 경우는 노동법(Droit du travail) 제 6351-1조에서 규정하는 행정청에 대한 등록을 면제하여 준다.

당연히 연구생, 소속기관, 연수기관 간의 3자 협의서가 필요하며, 연수 기간은 직업교육의 경우 6개월까지이며, 학생 신분의 연수생인 경우는 그 학습과정이 끝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다. 단, 18개월 이하여야 한다. 재정증명도 하여야 하는데 본국에서 프랑스 내의 최저임금 이상을 받거나 정부로부터 615유로 이상의 장학금을 받아야 한다.

18) 이들 국가는 베냉, 콩고, 모리스, 세네갈, 튀니지 등이다. 세네갈과 튀니지는 중복된다.

■ 국가 간 인력 교류에 관한 협정

집중 직업군의 선정

현재 프랑스는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프랑스는 도입이 시급한 직업군(Métiers en tension)을 작성하고 각국 간의 협정(accords bilatéraux)을 체결하여 전문 인력을 수입하고자 한다. 당연히 직업군의 종류는 각국의 특성에 맞추어 다양하다. 가령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경우 직업군의 수는 150개이지만 가봉의 경우 9개이다¹⁹⁾. 특히 프랑스는 인력 도입이 시급한 30개의 직업군을 선정하였는데 주로 교육, 과학, 공학(IT), 정보와 상업 등 3차산업이다.

국가 간의 협정

프랑스의 외국 전문직 도입은 인력 수출국의 발전까지도 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수단으로 양국 간의 협정을 통해 상호 발전을 꾀한다. 현재 프랑스는 14개 국가와²⁰⁾ 협정을 맺었는데 이 중 8개국은 국회의 승인을 받았고 나머지는 진행 중이다.

이 협정의 내용은 수출국 인력의 프랑스 체류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단기 근로(salariés et travailleurs temporaires) 체류증과 능력과 재능(Compétences et Talents) 체류증을 부여한다. 단 능력과 재능 체류증은 국가별로 할당이 있는데 연당 100개에서 1,500개 사이에서 배부한다. 그리고 앞서 설명하였듯이 청년 전문직(Jeunes professionnels)에 대한 배려도 국가 간의 협정에 기초한다. 또 다른 특혜는 체류 기간의 연장이다. 협정을 맺은 국가 출신의 외국인인 취업 기간이나 구직

19) 예를 들어 가봉의 경우 그 9개 분야는 ① 정보설계자, ② 정보처리기술자, ③ 회계정보 감사, ④ 공공 건축 기술연구자, ⑤ 공공건축 작업자, ⑥ 경영기술자, ⑦ 보험상담가, ⑧ 상업 및 은행 담당자, ⑨ 보험법 전문가 등이다.

20) 이들 14개국은 베냉, 부르키나, 캄페르, 콩고, 가봉, 모리스, 세네갈, 튀니지, 카메룬, 리비아,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러시아, 세르비아 등이다.

기간을 6개월에서 9개월까지 늘릴 수 있는데 예외로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의 경우 1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모리스의 경우는 전문인력 간 이동의 편의를 15개월 기한의 이주와 개발 비자라는 특별비자까지 만들어 준다.

■ 향후 기조 및 맺음말

프랑스의 2006년 입법 이후 이민법(외국인의 입국과 거주 및 망명법)은 2010년에 개정이 있었는데 2010년 개정법(일명 ‘베송’ 법)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체류권의 축소, 추방 강화, 국적 박탈로 간추릴 수 있다²¹⁾. 이는 사르코지 정권의 우경화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항하여 사회당 등의 좌파 정치단체와 노조, 인권단체 등이 연합하여 베송법의 인종주의적 성격을 규탄하기도 하였다²²⁾. 이러한 틈바구니 속에 유럽 블루카드를 국내법화한 것이 전문인력에 대한 유인책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사르코지 정부의 외국인에 대한 강경 정책은 계속될 것 같다.

프랑스는 세제 등 적극적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외국전문인력을 유치하기보다는 까다로운 체류 조건의 완화와 절차를 간소하게 하여 줌으로써 전문인력을 유치하려는 소극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불이익도 없는 대신 크게 이익도 주지 않는 ‘느슨한 통합주의’²³⁾ 경향이 아직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세계주의적 시각에서 주로 제3세계인 인력 수출국의 발전까지 꾀하는 여러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한국의 경우 체류증을 사증(비자)이 대신하고 있는데 그 종류의 수가 매우 많다²⁴⁾. 하지만 배타

21) 강진희(2010), 『통신원 브리프(프랑스)』, 2010년 6월호, 이민정책연구원, p.3 참조.

22) AP 통신 2011년 3월 4일자, <http://fr.news.yahoo.com/3/20110304/tfr-immigration-besson-loi-manifestation-56633fe.html> 참조.

23) 김정순, 위 보고서, p.83 참조.

24) 외교사증으로 외교, 공무, 협정이 있고, 취업사증으로 단기취업,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예술흥행, 특정활동, 비전문취업, 내항선원, 관광취업이 있고, 비영리 단기사증으로는 일시 취재, 단기상용, 단기종합이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 장기사증으로는 문화예술, 유학, 산업연수, 일반

적임을 알 수 있는데 가령 국익에 도움이 되는 비자로 꼽을 수 있는 기업 투자의 경우를 보면 ‘외국인투자촉진법’이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여 한다. 전문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구직비자를 보더라도 취업비자 소지자 중 세계 300대 기업이나 세계 200대 대학(원) 출신자 혹은 필수 전문인력으로 1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전문인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도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많은 인력을 외국에서 수입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단순노동 성격의 인력만을 수입한다면 우리도 프랑스와 같은 이민 2세대의 높은 실업률과 통합 실패로 부작용을 겪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성장가능성이 높고 우리 사회에 기여가 되는 전문직 인력 수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프랑스의 정책, 특히 외국인력 체류의 분류에 대한 시각이 참고가 될 것이다. **KLI**

연수, 취재, 종교, 주재, 기업투자, 무역경영, 구직, 방문동거, 거주, 동반, 영주 기타가 있다.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사이트, <http://www.hikorea.go.kr/pt/index.html> 참조.